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2024. 8. 29.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8월 선고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24. 8. 29.(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 8. 29.(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6건. 끝.

보도자료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1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획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쟁송해역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가중치를 다른 유인도들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잠정적인 등거리·중간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2024. 8.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남해군)과 피청구인(통영시)은 모두 경상남도에서 남해안을 바라보며 해안선을 서로 동서로 대향하여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풍력 주식회사는 2021. 4. 23. 청구인에게,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상 위치도 등을 적시하면서 해당 수역의 공유수면관리청 여부를 문의하였다. 청구인은 2021. 6. 9. ○○풍력에게 ‘새우조망어업구역은 우리군이 공유수면관리청이나, 그외 해역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풍력 주식회사는 2021. 7. 23. 피청구인에게, 위 새우조망어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동쪽 해역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28. ○○풍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을 하였다(2021. 9. 28.자 허가처분).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경상남도는 2021. 12. 23. 해상경계 갈등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협의는 도출되지 아니하였다.
- 위 허가처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풍력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30. ○○풍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2021. 12. 30.자 연장처분).
- 청구인은 위 해역에 관한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9.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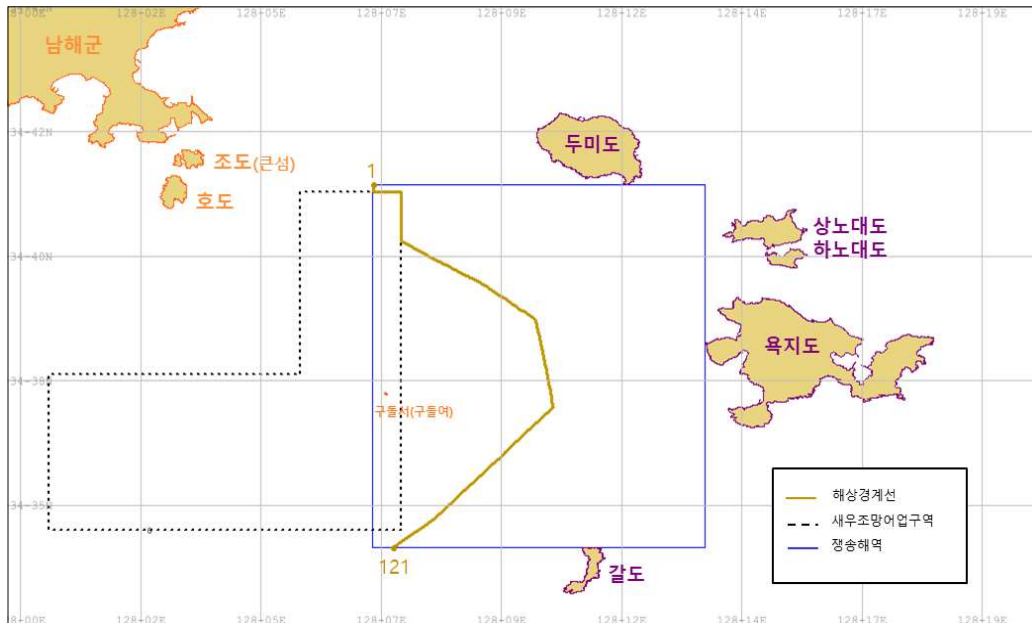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 관할 무인도인 ‘구들여’와 피청구인 관할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갈도·상노대도·하노대도’ 사이의 해역(쟁송해역)에 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경상남도의 구들서와 두미도, 욕지도, 갈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사이의 해역

중 [별지1] 도면 표시 1부터 121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왼쪽(서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위 선의 오른쪽(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별지1] 도면



□ **법정의견 요지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청구인은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2021. 9. 28.자 허가처분 및 2021. 12. 30.자 연장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풍력 주식회사는 2019. 3.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352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쟁송해역에 건설할 계획이므로, 향후 쟁송해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풍력 주식회사가 기존의 발전사업허가 및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피청구인은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을 주장하며 2021. 9. 28.자 허가처분 및 2021. 12. 30.자 연장처분의 맥락에서 언제든지 유사한 장래처분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결국, 쟁송해역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장래처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 분쟁을 해결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불문법상 해상경계 성립 여부

- 청구인은 쟁송해역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북·남·서쪽 쟁송해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구획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청구인 소속 어민들도 그 허가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과 그 소속 어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돌서 북·남·서쪽 쟁송해역에는 이를 청구인의 관할해역으로 하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이 인정된다.
- 그러나 새우조망어업구역을 넘어서는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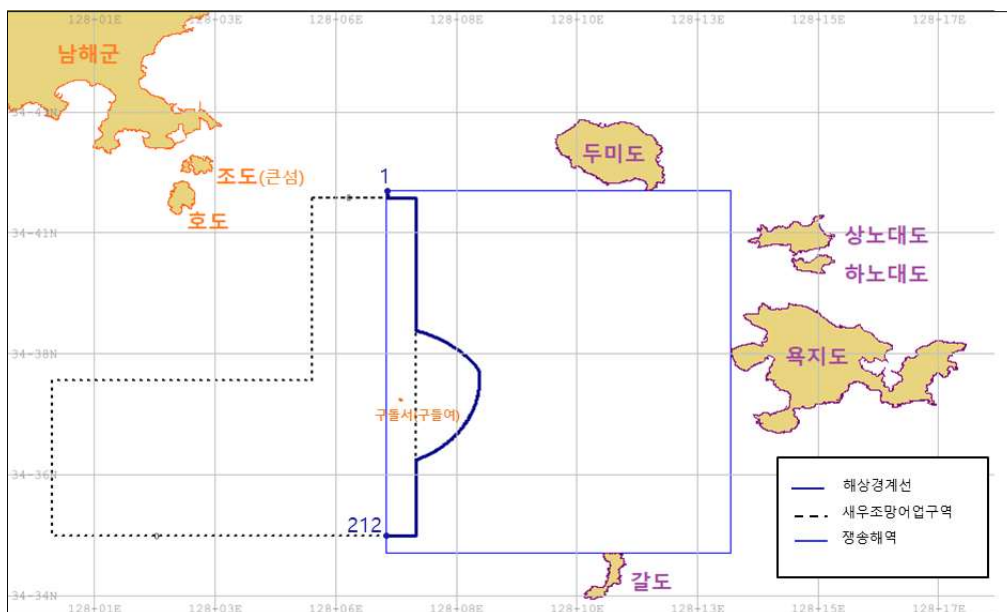
3.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

-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획정할 경우, 청구인은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구돌서를 기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쟁송해역은 청구인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와 피청구인 관할 유인도인 두미도·육지도·갈도·상노대도·하노대도로 둘러싸여 있음),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갈도)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는 유인도인 두미도·육지도·갈도·상노대도·하노대도와 무인도인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중간선으로 획정함이 상당하고, 이는 [별지1] 도면 표시 1부터 121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같다.

□ **반대의견 요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3.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

- 쟁송해역을 둘러싸고 있는 두미도·욕지도·갈도·상노대도·하노대도는 유인도로서 해당 도서에 거주하는 피청구인 소속 주민들은 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돌서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무인도에 불과하다. 구돌서 인근 98-7해구 조업해역의 어업활동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송해역이 피청구인 관할 유인도들로 둘러싸여 있음에 반하여, 구돌서는 청구인이 관할하는 본섬·유인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남해 해상에 홀로 위치하는 무인도라는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쟁송해역 남쪽에 위치한 갈도는 1973년 피청구인의 관할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 관할변경에 따라 갈도 인근 해역도 피청구인의 관할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 등거리·중간선 원칙의 적용에 있어 법정의견과 같이 무인도인 구돌서를 다른 유인도들과 함께 그 기점에 포함시키되, ㉡ 구돌서와 다른 유인도들 사이에 1대3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잠정적인 등거리·중간선을 조정하여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이를 반영한 반대의견에 따른 해상경계는 아래 도면 표시 1부터 212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같다.



□ 결정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의 범위에는 육상과 해상이 포함되므로,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육상의 경계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육상경계는 비교적 명확하였음에 반하여 해상경계는 그동안 불명확하였고, 관련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구역과 경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그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경계에 따라야 하고,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19. 4. 11. 2016헌라8등 참조).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은 ‘㉠성문법상 해상경계 확인, ㉡불문법상 해상경계 확인, ㉢형평원칙상 해상경계 획정’이란 순서로 결론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건은 ㉡→㉢의 순서로 결론에 이르게 됨)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재판관 5인)은, ㉡ 쟁송해역 중 일부(구들서 북·남·서쪽)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나, 그 대부분 영역(구들서 동쪽)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음, ㉢ 기존 선례(2016헌라8등)의 법리에 따라 쟁송해역을 둘러싼 유인도들과 중요 무인도(구들서)를 기점에 포함하여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를 획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반대의견(재판관 4인)은, ㉢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 획정에서 중요 무인도인 구들서를 기점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쟁송해역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구들서의 가중치를 다른 유인도의 1/3 수준으로 낮추는 조정 법리를 제시하였다.

보도자료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2021헌바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1)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2)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2024. 8.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 등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9년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를 받기 위해 교습기간을 2018. 12. 6. ~ 2019. 10. 25.로 정하여, 2018. 12. 6. 수강료 187만 원을, 2018. 12. 31. 교재비 18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 진○○은 2019. 1. 10. 청구인에게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면서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진○○은 청구인을 상대로 수강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인용되었으나,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위 소송 항소심 계속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한다),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 결정주문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하여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또한 교습비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상,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급부(교습행위)와 반대급부(교습비등)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이와 같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교습비등반환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여,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에 관하여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등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 한편, 학원법은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이상과 같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소극)

- 위임조항은,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은, 학원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한편,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권익 보호라는 학원법의 입법목적, 학원 설립·운영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에서 교습비등을 징수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 4조 제1항,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서는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던 학원설립·운영자 측의 사유에 더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는 내용의 1999년 법률 개정이 행해진 이후, 관련된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조항, 교습비등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에 관하여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학원법 시행령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학원법 조항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보도자료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2021헌바3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 의견이 있다.



2024. 8.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4. 남양주세무서장에게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 계속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 원

□ 결정주문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의 선례

- 헌법재판소는 현재 2012. 2. 23. 2011헌가8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따라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승마장 입장행위와 달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골프장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선례 변경의 필요성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되었

으나,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개별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속 상승해온 것에 비해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1998년 이래 12,000원의 고정된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별소비세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책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과 수준에 맞추어 과세 대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2. 1.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등 실제 정책과 세제도 골프 산업의 발전과 골프의 대중화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면서, 대중성 요건에 구애됨 없이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실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골프장의 수는 총 골프장 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약 200개소에서 2023년 약 160개소로 감소하였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선례에서 골프장과 비교하여 판단한 바 있는 승마장의 경우 선례 선고 당시에 비해 승마인구 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22년 기준 그 산출 총액이 약 1,0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6조 원을 상회하는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은 승마장 외에도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개별소비세가 골프장에만 부과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 또한 청구인은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경마장 등 사행행위 장소에만 부과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라는 과세 방식의 공통점으로 인해 입법기술상 같은 항목에 규정된 것에 불과할 뿐 사행행위 장소에 대한 과세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는 그 목적과 세율이 다르므로, 단순히 형식상 같은 조항에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1. 과잉금지원칙 위반

-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행위는 더 이상 응능부담과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골프장의 사정을 고려한 차등적인 세율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이러한 과세로 달성될 수 있는 과세형평 등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재산권의 침해에 이르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적정한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그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

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들 체육시설의 회원권인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과 함께 그 취득에 취득세가 부과(지방세법 제7조 제1항)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치성이나 이용접근성에 있어 이들 회원제 체육시설을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위 체육시설 중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골프장이 유일하다. 개별소비세의 정책적 목적이나 입법자가 조세법 영역에서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2. 2. 23. 2011헌가8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나, 골프장 이용행위의 비용과 이용접근성, 정부 정책 및 세제변화, 개별소비세의 세율, 다른 체육시설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은 골프장 이용행위를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획일적인 세율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개진하였다.

보 도 자 료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2023헌가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4. 8.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제청신청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 및 위 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제청법원은 2023. 2.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결정주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쟁점의 정리

-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종료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는 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격취소사유’를 정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결격사유’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고유한 문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위헌성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전문체육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

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등과 같이 법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이외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체육지도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바73),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¹⁾

1) 위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도 개정법 시행 후에 형이 확정되어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부칙조항이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급입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보 도 자 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2021헌마450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 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중 ‘II.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2024. 8.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1. 3. 25.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조치를 이행한 다음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 청구인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 3.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첨부된 안내문 중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 3.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중 ‘II.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이하 ‘행정기관 근로자’라 한다)가 가구원인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II.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② ③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 이 사건 제외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와 이 사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격리자를 차별취급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 이 사건 제외규정은,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경우 행정기관 근로자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격리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근로자의 행위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제외규정은 국가가 코로나19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의 요건 내지 범위를 정한 것으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주장은, 이 사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행정기관 근로자 가구의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비 지원 주체로서,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원·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그 행정기관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자와 함께 격리되더라도 입원·격리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
-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질병관리청장이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설정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행정기관 근로자가 속한 가구는 가구원이 격리하더라도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보도자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

[2023헌마79 기소유예처분취소]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청구인의 우산과 피해자의 우산의 외관상 유사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이 가져온 우산으로 착오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24. 8.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2. 8. 9.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우산꽂이에 꽂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우산 1개를 꺼내 몰래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이라고 착오하여 가져간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2. 10. 2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2년 형제586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 귀속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참조).

●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소극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2022. 8. 9. 12:11경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고, 우산꽂이에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을 꽂아두었다. 피해자는 12:44경 식당에 들어와 우산꽂이에 자신의 검정색 장우산을 꽂아두었다.
 - 청구인 일행은 13:01경 식사를 마쳤고, 청구인 일행 중 1명이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우산을 우산꽂이에서 꺼내들어 잠시 살펴보았다가 다시 꽂아두고, 다른 우산꽂이에서 피해자의 우산을 꺼내들

- 어 마찬가지로 잠시 살펴본 뒤 이를 가지고 나갔다.
- 경찰은 카드사로부터 식당에서 결제한 청구인 일행의 신상을 파악하여 위 일행을 통해 2022. 10. 17. 청구인에게 연락하였다.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고, 오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우산을 잘못 가지고 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 집에 피해자의 우산과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62세였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약 3년 7개월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대학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절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그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포장이 씌워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우산에는 ‘벤츠’라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에서 ‘벤츠’ 마크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사건 당시 청구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우산을 찾을 때에는 이미 청구인의 일행이 신용카드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우산을 절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